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23. 0. 00. 공포, 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의 기한, 조치계획서 제출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의무 운행 기간 범위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그에 따른 보조금 회수요율을 정하며,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주행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을 “수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바목부터”를 “사목부터”로, “제외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상조업장비로서 2006년 이전에 제작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는”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으로, “자동차 중”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은 자동차”를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

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79조의3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제79조의4제1항제1호 중 “5년”을 “5년(영 제1조의2의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 목적으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79조의11제1항제1호나목 중 “제작서·종류·용량”을 “제작서·종류·용량·에너지밀도”로 한다.

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10까지를 각각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11까지로 하고,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를 인증받지 않고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명령은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이하 “수명인”이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제조량, 수입량, 공급량 또는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계획 물량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4. 기타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수명인은 조치명령 이행 완료 후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장치의 명칭, 제조·수입 또는 판매 수량 및 미조치 수량

2. 미조치 수량 등의 명세서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결과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수명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의3(중전의 제82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4서식”을 “별지 제37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20조의3제3항 중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로, “검사합격증을”을 “검사결과서를”로 한다.

제12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사합격증”을 각각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합격증 또는”을 “검사결과서 또는”으로, “검사합격증에”를 “검사결과서에”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7호의4를 제7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제조·수입, 공급·판매 또는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장치가 법 제60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별표 5 제2호가목의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종류란 중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를 “지게차”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3)나) 전단 중 “2020년까지 2%, 2021년까지 10%, 2022년까지 30%, 2023년까지 45%, 2024년”을 “2024년까지 30%, 2025년까지 45%, 2026년”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한다”를 “한다.(「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4의 배출공정란 중 제4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천재지변, 돌발적 고장, 시설 파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송시설에서 먼지가 비산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먼지가 흩날리지 않

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1) 즉시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혹은 물을 뿌리는 등 먼지 제거 조치를 하고, 2시간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유선 등으로 보고 할 것

2) 1)에 따른 조치 이후 48시간 이내에 비산먼지 발생 사유 및 대책, 개선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것

별표 17 제2호아목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질소산화물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2024년 9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고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다목을 적용하고, 자동차제작자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7호가목 본문 및 비고 제8호가목 본문을 각각 적용한다.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kg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2024년 9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고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다목을 적용하고, 자동차제작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7호나목 본문 및 비고 제8호나목 본문을 각각 적용한다.

다. 2024년 9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5년 9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5년 11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9호의 가목 및 나목의 본문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차종	구분	질소산화물	입자개수	측정방법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차량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0.114 g/km 이하	9×10^{11} #/km 이하	RDE-LDV
	소형·중형화물차	$RW \leq 1,305\text{kg}$	0.114 g/km 이하	9×10^{11} #/km 이하	
		$1,305\text{kg} < RW \leq 1,760\text{kg}$	0.150 g/km 이하	9×10^{11} #/km 이하	
		$RW > 1,760\text{kg}$	0.179 g/km 이하	9×10^{11} #/km 이하	
	다목에 해당하는 차량		0.088 g/km 이하	8.04×10^{11} #/km 이하	

별표21의2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저공해자동차 중 사용기간이 48개월이상 96개월 미만인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회수요율은 20%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성요령
1)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란 중 대표자성명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제출서류 다음 및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작성요령란을 각각 신설한다.

작성요령
1)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란 중 대표자성명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앞면 중 전기자동차 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 자동차 제원	⑦제작사 (제작연도)	⑧자동차 명칭(형상)	⑨자동차 형식(용도)	⑩차종	⑪차대번호	⑫1회 충전 시 주행거리(주행 모드)
	⑬주 배터리 종류 (제작사)	⑭주 배터리 전압(V) 및 용량(Ah)	⑮주 배터리 에너지밀도 (Wh/kg)	⑯탑재 충전기 정격입력전력 (충전용량, kW)	⑰구동 모터제원	⑱차량 총 중량
					형식 : 최대출력(kW) : 최대토크(N·m) :	
	⑲공차 중량	⑳충전구 규격	㉑최대 속도	㉒구동형태	㉓내연기관 제원	㉔시험에 관한 사항
					사용연료	실도로 부하력(hp)

					배 기 량	도로흡수력계수
					출력/토크	코스트다운 시간(sec)

별지 제37호의4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37호의4서식]”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37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영 제1조의2의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 목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4항, 제82조의2 및 제13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하

고, 별표5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저공해
자동차를 등록말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기간 산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77조제4항
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동식 지게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전동
식 지게차(법 제46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한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에 한정한다.)는 저공해건설기계로
본다.

명령서 번호 제 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 공회전제한장치 [] 회수 [] 폐기 명령서			
수명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명령 사항	⑤ 대상 장치의 명칭		
	⑥ 사 유		
	⑦ 명령이행 기한		⑧ 조치계획서 제출기한
점검일시 및 장소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점검장소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회수 또는 폐기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 지방환경청장 · 수도권대기 환경청장 직인			

제	호(Certificate No.:)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 ([]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			
업 체 명 (Company)			
대 표 자 (Representative)		사 업 자 등 록 번 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주 소 (Address)		전 화 번 호 (Phone number)	
신 청 일 (Application date)		시 험 기 관 (Testing institution)	
시 험 책 임 자 (Testing Manager)	(서명/Signature)	시 험 담 당 자 (Tester)	(서명/Signature)
시 험 방 법 (Testing method)			
1. 검사결과(Inspection result)			
시 료 (로 트) (Sample (Lot))	시 험 항 목 (Testing item)	기 준 (standard)	시 험 결 과 (Testing result)
2. 적합여부(Final result): []적합(Conformity) / []부적합(Non Conformity)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We hereby issue a 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Para. 2, Article 74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Para. 3, Article 120-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 사항> (Changes)

일 자 (Date)	내 용 (Details)	비 고 (Note)

<참고 사항> (Reference)

일 자 (Date)	내 용 (Details)	비 고 (Note)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 사항> (Changes)

일 자 (Date)	내 용 (Details)	비 고 (Note)

<참고 사항> (Reference)

일 자 (Date)	내 용 (Details)	비 고 (Note)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 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 ----- ----- ----- ----- ----- ----- ----- ----- <u>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u>수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⑤ -----

----- 제출(「전자
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결합시정 현황 및 부품결합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1. <u>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 (50cc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u> 2. <u>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u> 3. <u>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u> <u>가.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 장치: 5년</u> <u>나. 가목 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3년</u>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	<u>보증기간을 적용한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 ----- ----- ----- ----- -----. 1. ----- ----- ----- ----- <u>삭</u>목부터 ----- -----
--	---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생략)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
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
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
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官能検査, 사람의 감각기관으
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제외한 자
동차 또는 「항공사업법」 제
44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맞
게 제작된 지상조업장비로서
2006년 이전에 제작된

2. (현행과 같음)

② -----

-----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

1. -----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

-----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생략)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저공해자동차

가. ~ 라. (생략)

<신설>

마. (생략)

2. (생략)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

-----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바. (현행 마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

-----.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u>5년</u> 2. (생략) ② (생략)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 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 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 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생략)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 터리의 <u>제작서·종류·용</u> <u>량</u>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 함된 서류 1부 다.·라. (생략) 2. (생략)	1. ----- ----- <u>5년(영</u> <u>제1조의2의 저공해자동차 중</u> <u>전기자동차를 수출 목적으로</u> <u>등록말소하는 경우에는 8년)</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① ----- ----- ----- ----- ----- ----- ----- -----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제작서·종류·용량</u> <u>·에너지밀도</u> ----- -----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공회전제한장치를 인증받지 않고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명령은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이하 “수명인”이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제조량, 수입량, 공급량 또는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계획 물량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생 략)	<u>기간</u> 3. <u>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u> 4. <u>기타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u> ③ <u>수명인은 조치명령 이행 완 료 후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 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u> 1. <u>조치장치의 명칭, 제조·수입 또는 판매 수량 및 미조치 수 량</u> 2. <u>미조치 수량 등의 명세서 및 향후 조치계획</u> 3. <u>재발방지를 위한 대책</u> ④ <u>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 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은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결과서 에 보완이 필요하면 수명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u>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u>별지 제37호의4서식</u>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④ (생략) <u>제82조의3 ~ 제82조의10</u> (생략)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②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u>검사합격증</u>, 첨가제 검사 <u>합격증</u> 또는 촉매제 <u>검사합격증</u>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	② ----- ----- <u>별지 제37호의5서식</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u>제82조의4 ~ 제82조의11</u> (현행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10까지와 같음)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검사결과서</u>, 첨가제 <u>검사결과서</u> ----- <u>검사결과서</u>를 -----. 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
--	---

업체의 변경신고) ① (생략)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 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촉매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1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

업체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검사결과서 -----

--

2. -----
----- 검사결과서 -----

--

③ -----

----- 검사결과서 또는 -----
----- 검사결과서에 -----

-----.

제131조(출입·검사 등) ① ----

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의3. (생 략)

<신 설>

7의4. (생 략)

8.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부 칙

<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제1조 (생 략)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
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
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1.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
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
의 제조·수입, 공급·판매 또는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저장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장치가 법 제60조에 따
른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
려는 경우

7의5. (현행 제7호의4와 같음)

8.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
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
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영 제1조의2의 저공해자동차

제3조 (생 략)	<u>중 전기자동차를 수출 목적으로 등록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제3조 (현행과 같음)</u>
-----------	--